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기획동향

·제18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 평가와 주요 쟁점
·최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

|법제동향

·한미 FTA에 따른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유튜브의 저작권 분쟁 동향

|이용자섹션

·SNS 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공론장 제노포비아 확산에 대한 소고

|학술 탐방 ·IT 정치연구회

|Book & Paper Review|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인터넷 분야 논문 소개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KISO NEWS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협력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2 Vol.07 CONTENTS

"KISO 저널 7호는

이-이-이-이-이 후원합니다"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04 >>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를 관한 정책결정 김기중

|기획동향|

12 >> 제18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 평가와 주요 쟁점 김유향
 18 >> 최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
 19 >> -해의 ·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丁 鐸
 26 >> ·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선효정
 32 >>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김상미
 40 >> -국내 ·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이슈 나현수

|법제동향|

48 >> 한미 FTA에 따른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오승종
 56 >> 유튜브의 저작권 분쟁 동향 오세은

|이용자섹션|

60 >> SNS 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양홍석
 64 >> 인터넷 공론장 제도포비아 확산에 대한 소고李文光

|학술 탐방|

68 >> IT 정치연구회 이원태

|Book & Paper Review|

72 >>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김보라미
 74 >> 인터넷 분야 논문 소개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76 >>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이원태
 80 >> KISO NEWS

☞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저널 제7호|

발행일_2012.07.09.
 발행인_김상현
 발행처_(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자인_(주)더커뮤니케이션즈올림

|편집위원|

위원장 | 황용석 교수_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권현영 교수_광운대 법학과 | 김유향 팀장_국회 입법조사처
 박준석 팀장_Daum 고객센터기획팀 | 이원태 박사_KISDI 미래융합연구실
 태해진 팀장_SK커뮤니케이션즈 대외협력팀 | 오근숙 과장_NHN 정책실
 황창근 교수_홍익대 법학과



KISO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가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 재게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임시조치제도의 적용과 문제점을 고려하고, 임시조치 이후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KISO의 정책 결정에 대한 리뷰를 담아보았다.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 4. 25.에 한 정책결정의 주요 취지는 일정한 경우에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뼈대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해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게시물의 재게시를 요청하거나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게시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KISO의 정책위원회가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으며, 재게시 심의의 판단기준은 KISO의 기존 심의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의 도입과 그 의미

1) 임시조치제의 도입연혁

2007. 1. 16.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도입된 임시조치제는 2001. 1. 16.자 개정 때 추가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를 그 뿌리로 한다. 위 개정법률 제44조는 공개 게시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통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규제를 받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 개정법률의 제44조를 미국의 1998년 개정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512(c)에 규정된 ‘통지 및 제거(notice and takedown)’ 절차의 도입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으나,¹⁾ 위 규정은 미국법의 ‘통지 및 제거’ 절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을 분명해 보이지만, ‘통지 및 제거’ 절차를 국내 법률에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미국 저작권법상 “notice and takedown” 원칙의 요체는 간이한 재게시절차를 두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칠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과 삭제행위에 대한 면책의 효과를 주는 것인데, 위 개정 법률 제44조는 재게시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요건을 분명히 규정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위 개정규정 제44조는 당시 명예훼손 게시글이 게시된 경우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요건을 판단한 판례를 배경으로 한다. 즉, 법원은 게시판 운영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²⁾ 입안자도 위 규정을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였다.³⁾

위 법률 개정 이후 ‘연예인X파일’, ‘개똥녀’ 등의 사건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 역기능 대책반’ 등의 연구를 통해 2006. 2. 인터넷 실명제와 함께 임시조치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2007. 1. 개정법률에 포함되어 입법화되었다. 당시 입법과정에서 주로 ‘실명제’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을 뿐, 임시조치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임시조치제가 미친 제도적인 영향은 실명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임시조치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임시조치라 한다(제44조의2 제4항). 임시조치의 도입취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침해 등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⁴⁾

2) 임시조치제의 적용과 그 문제점

그런데 임시조치제가 도입된 이후 정보의 삭제 등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이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KISO정책위원

1) 황창근, ISP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한국

2) 서울지법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판결로 상고기각, 위 두 판결 모두 공간되어 있지 않아, 정상규, 인터넷과 명예훼손, 재판실무연구(1) 언론관계소송(2007), 310쪽에서 재인용)

3) 방석호,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래산업연구회(김영춘, 원희룡의원실) 주최 정보화의 역기능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자료집, 2000. 9. 19.

4) 정부가 제출한 2006. 10. 9.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118호) 제안 이유

러한 조치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다음의 표와 같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만여건에 달하였다.

<임시조치 현황>⁵⁾

(임시조치 후 영구 삭제건수 포함 / 단위: 건)

연도 \ 사업자	Naver	Daum	Nate	합계
2008년	31,953	27,454	691	60,098
2009년	37,342	57,712	1,449	96,503
2010년 9월까지 (12월까지 추정치)	27,914 (37,125)	45,798 (60,911)	956 (1274)	74,668 (99,31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재구성: 최문순의원실]

정보통신방법은 임시조치 후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한 30일 이후의 절차는 오로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겨져 있다. 임시조치제 도입 초기에 국내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어떤 곳은 30일이 경과한 후 자동 복구되도록 하였고, 어떤 곳은 30일이 경과한 후 자동 삭제되도록 하였으나, 2008년 ‘촛불사태’로 불리는 격렬한 사회적 논쟁과정을 거친 후,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재게시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 삭제되도록 방침을 바꾸었다. 즉, 임시조치된 글의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연간 10만여건의 게시글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피해주장 또는 피해에 관한 단순한 소명만으로 삭제되고 있는 것이 임시조치제의 현실이다. 임시조치제가 도입될 당시에 제기된 우려, 즉 OSP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선호함으로써 사이버언론에 대한 과잉억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비대한 포털 권력에 전능한 검열권을 부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⁶⁾가 현실화된 것이다.

임시조치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적법한 게시글이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단순한 소명만으로 영구히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포털서비스 ‘다음’의 경우, 임시조치된 게시글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해주장자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데, 2010년 1년 동안 ‘다음’이 요청한 596건의 사례 중 25건(심의건수 대비 4%)에 대해서만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으므로,⁷⁾ 이 수치를 단순 대입하면, 임시조치된 게시글 중 96%의 게시글이 타인의 권리침해와 무관한 적법한 게시글임에도 불구하고 삭제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와 자율규제의 필요성

임시조치제에 대해서는 임시조치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상 권리침해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⁸⁾ 임시조치는 사적 검열의 문제를 촉발시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누른다는 점, 권리침해 정보는 당사자들의 문제이므로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이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론의 측면

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⁹⁾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견해¹⁰⁾가 제기되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임시조치가 취해진 이후의 절차가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임시조치의 가장 주요한 폐해인 ‘게시물의 결과적인 영구 삭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시조치 이후에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구권이 불분명하고, 임시조치 기간인 30일 이후 처리방법이나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구 이후의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으므로, 임시조치제의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완결성을 위해서는 사후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였다.

임시조치가 취해진 게시물에 대한 사후처리방안으로는 법정 임시조치 기간(30일)이 종료하면 무조건 재게시하는 방안과 법정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하면 특별한 판단이 없는 한 무조건 삭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하면 게시물을 무조건 재게시하는 방안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목적(30일 동안 접근차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30일 경과 후 재게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안이기는 하나, 서비스제공자로서는 자신의 위험으로 정보를 재게시하는 것을 꺼릴 수 있으므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재게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입법적 뒷받침이 없이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

5) 국회의원 최문순의 2010. 11. 16. 자 “표현의 자유 침해 ‘임시조치’ 해마다 증가” 제목의 보도자료

6)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1443쪽

7)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1. 5. 12., 51쪽. 참고로 2010년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1,925건) 대비 시정요구건수(445건)의 비율은 23.1%이다.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2011. 4.) 160쪽)

8) 황창근, 위 논문, 259쪽

9) 송백현, 정보통신방법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에 대한 행정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정보법학회 2012년 2월 사례연구회 발표문, 20쪽

10) 박경신, 위 논문, 40쪽

안은 KISO와 같은 자율심의기구가 재게시 요청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안이다. KISO도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이하 ‘자율규제 연구보고서’)에서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적심의기관에서 그 심의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¹⁾. 때마침 헌법재판소는 지난 5. 31. 임시조치제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2010헌마 88호) “임시조치 이후에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게시청구’를 해 올 경우, 그리고 최장 30일의 임시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단순히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두 가지 사안(재게시청구에 대한 처리,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의 처리)이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들 사이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위 헌재결정은 KISO가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재게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는 분명한 법적 선언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정책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1) 정책결정의 적용대상

이번 정책결정의 적용대상인 ‘재게시 심의 대상’은 회원사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이다.

회원사는 법률과 이용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불법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는 물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에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 제3자의 신고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접근차단이나 삭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사가 게시물에 대해 이렇게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이번 정책결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번 정책결정은 게시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 회원사가 그러한 요청에 수용하여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요청의 주체와 심의요청의 기준

회원사는 첫째, 정보게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둘째, 회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KISO에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KISO는 위 자율규제 연구보고서에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절차와 재게시 요청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안 및 정보게시자가 재게시 요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KISO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게시자가 그 심의기관으로 KISO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번 정책결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절차나 기준을 마련

하지 않고, 향후 과제로 유보해 두었다.

따라서, 정보게시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재게시 요청을 하고, 이 요청을 받은 회원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게시 심의를 요청할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회원사가 반드시 KISO에 재게시 심의를 요청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 요청 때 취해야 할 절차

정책결정은 회원사로 하여금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과 임시조

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회원사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리고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회원사는 임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KISO에 재게시 여부에 관한 심의(사실상 임시조치의 타당성에 관한 심의라 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회원사로 하여금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심의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과 임시조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다.



11)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콘텐츠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9, 방송통신위원회, 2010. 8. 3. 1., 83쪽

4) 심의기준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 여부일 수밖에 없고,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KISO가 그동안 축적한 정책결정과 심의 결정에 집약되어 있으므로, KISO의 기존 규정과 선례(정책결정과 심의결정)가 곧 재게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며, 이번 정책결정은 이 판단기준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다만, KISO의 기존 규정과 선례는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판단기준이므로, 재게시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그와 다를 가능성이 있어, 이번 정책결정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에 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KISO의 기존 규정과 선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나, 판단 사례가 축적되면서 그 심의기준이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변형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KISO의 이번 정책결정은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간단한 내용이나, 임시조치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후 절차에 관한 입법적 불비와 입법적 불비의 영역을 자율 영역으로 규정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함께 생각하면, 그 의미는 무척 크다. 또한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정보 재게시 요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서비스제공자가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원칙과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사이에서 임시조치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미있는 결정이라 생각한다. KISO저널





본문에서는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인터넷과 미디어 분야 법률안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된 다양한 인터넷 규제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제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제18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 평가와 주요 쟁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1. 들어가는 말

2012년 7월 2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로서 제18대 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제18대 국회는 최근 몇 년 스마트폰과 SNS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야기된 각종 인터넷 및 미디어 규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국회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진통을 겪은 미디어법을 둘러싼 대립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며, 논란 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많은 미디어 및 인터넷규제 관련 법안들이 제기되고 논의되었지만, 임기만으로 더불어 폐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제18대에서만 총 75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중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법률안은 4건에 불과하며 57건의 법률안이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이렇게 많은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정부 및 국회의원들의 새로운 소통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만큼 다양한 인터넷 규제 관련 논의들이 제안되고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규제 관련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지난 제18대 국회에서의 미디어 분야 제출 법률안 중 주로 임기만으로 폐기된 법률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19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쟁점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제18대 국회 미디어 분야 법률안 현황

최근 입법 추세 중의 하나는 법률안 발의건수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정부제출 법률안에 비해 의원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도 못한채 임기만으로 폐기되는 법률안의 숫자도 늘어났다.

특히 제18대 국회의 법안 제안율 및 법안폐기율은 <표 1>에서 보이듯이 제14대 이래 사상 최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폐기율의 경우 제14대 국회(1992~1996)가 139건, 제15대 국회(1996~2000)가 390건, 제16대 국회(2000~2004)에서는 754건이 임기만으로 폐기 되었으나, 제17대 국회(2004~2008)들어서는 의원발의 법

률안의 급증에 힘입어 임기만으로 폐기도 3,15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제18대 국회에서는 제17대의 배인 6,301건에 달해 상당수의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만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역대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제14대-제18대)

구분	접수	폐기	임기만으로폐기	철회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부결
18대	13913	919	6301	508	1634	719	3825	7
17대	7489	420	3154	89	954	961	1906	5
16대	2507	126	754	41	402	546	634	4
15대	1951	90	390	47	577	543	304	
14대	902	17	139	18	350	306	72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참조하여 작성]

제18대 국회에서의 미디어 관련 법률안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된 방송분야 법률안은 총 163건으로서 이중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방송법」 개정법률안은 총 79건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중 원안 및 수정가결된 법률안은 4건에 불과하며, 임기만으로 폐기된 것은 총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제18대 국회 방송분야 법률안 제출현황

- 방송법 개정법률안 (79건)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법률안 (9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0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0건)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9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법률안 (4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법률안 (5건)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법률안 (2건)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5건)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12건)
-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 (1건)
-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1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6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법률안 (7건)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3건)

인터넷 및 통신분야의 경우 총 제안된 법률안은 172건으로서 이중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총 75건이 제안되었으며,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은 4건에 불과한데 비해 임기만료 폐기는 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제18대 국회 인터넷 및 통신분야 법률안 제출현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75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34건)
전파법 개정법률안 (18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2건)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 (9건)
정보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7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법률안 (16건)

<표 4> 제18대 국회 인터넷 및 통신분야 법률안 처리현황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철회	임기만료폐기	합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2	12	2	57	75
전기통신사업법	2	2	5	1	24	34
전파법	3	1	3	1	10	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0	3	0	6	12
전기통신기본법	2	1	0	0	6	9
정보통신공사법	2	2	0	0	3	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0	1	0	0	0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	1	4	0	9	16
합계	16	10	27	4	115	172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제18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인터넷 이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16대 국회의 경우 21건 그리고 17대 국회의 경우 31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는데 비해 제18대에는 75건이 제출되었다.

3. 제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법률안의 주요 쟁점

제18대 국회에서는 특히 강력한 인터넷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많이 제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논란을 촉발시킨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법률안으로서¹⁾ 미디어 법 논쟁의 과정 뿐 아니라 제18대 국회 인터넷규제 논의를 가장 대표하는 법률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외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국방, 외교, 전쟁, 재난 등 국가적 중대분야에 대한 허위내용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안들이 제안되기도 하였다.²⁾

제18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법률안 중 제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큰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 제도의 존폐와 운영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로 대표되는 인터넷 규제 정책은 현 정부 들어 강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국회에서는 그 제도보완 관련 법률안의 제출이 이루어져 왔다.³⁾ 그러나, 최근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 외국계 인터넷 회사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에서는 그 구체적인 제도 수정방향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둘째,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죄의 적용 및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둘러싼 분쟁조정 업무의 소관을 둘러싼 제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재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⁴⁾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제도의 존치 문제이다. 현행법에서는 일방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사업자의 과도한 권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제19대 국회에서도 임시조치의 존폐문제를 비롯, 그 절차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마련 등 오남용방지를 둘러싼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다.⁵⁾

또한 게시판 운영자의 의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 1) 나경원의원등 12인 2008. 11. 3 제출, 성윤환의원등 11인 2008. 12. 24 제출
- 2) 정욱임의원등 13인 2011. 1. 19 제출, 이두아의원등 10인 2011. 2. 18 제출
- 3) 본인확인인 대체수단 개발,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한선교의원등 11인 2009. 3. 16 제출 개정법률안, 본인 확인조치 관련 조항의 삭제에 대한 조승수의원등 10인 2010. 4. 14 제출 개정법률안, 본인확인제도의 구체적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김금래의원등 12인의 2010. 6. 28 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 4)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비롯한 타인 권리 침해정보 관련된 분쟁조정업무의 소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과 실질적 역할 보장을 위한 이용경 의원등 11인의 2009. 9. 8 제출 개정법률안과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박영선의원 등 17인의 2012. 1. 9 제출 개정 법률안 등이 있다.
- 5) 임시조치당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이용 경의원등 22인 2008. 11. 7 제출 개정 법률안,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을 방지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임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문순의원등 17인 2008. 12. 11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검색불능조치 요청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한 홍정욱의원등 22인 2008. 12. 23 제출 법률안, 임시조치와 심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와 게시물작성자의 표현자유 보장을 목표로 한 이종걸 의원등 10인 2008. 5. 13 제출 법률안,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사덕의원등 26인 2009. 6. 8 제출 법률안, 삭제 및 임시조치의 처리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자율규제의 오남용 방지하고자 한 심재철의원등 24인 2009. 11. 18 제출 법률안, 임시조치의 금지를 제안한 최문순의원등 18인 2010. 3. 22 법률안 등이 있다.

이루어질 전망이다. 게시판 운영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든지, 불법정보 인지 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 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⁶⁾

넷째, 유해 및 불법정보의 범위와 심의기구 지정에 대한 논의이다. 인터넷 상의 유해 및 불법정보의 범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사진과 영상 등 유해게시물과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알선 정보 등으로 확장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논의들이다.⁷⁾

다섯째, 온라인 광고의 규제체제 마련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 광고는 지금 TV, 신문과 더불어 3대 광고매체로 부상하였으며 그 급격한 확대와 더불어 불법 유해 온라인 광고와 광고기업간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도 야기되어 왔다. 지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안되었으나 가결되지는 못하였으며, 온라인광고의 규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제19대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⁸⁾

여섯째, 사자의 인터넷정보에 대한 관리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 업체별로 약관이나 공동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적 논의의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⁹⁾



4. 맺음말

이상에서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많은 인터넷 규제 관련 이슈들 중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거나 재론될 가능성이 큰 주제들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제19대 국회에서도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실명제의 존폐 문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임시조치의 적절성과 절차의 정당성 확보방안, 온라인상 불법 및 유해정보의 범위와 대처방안 등은 제19대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 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mVoIP 제공을 둘러싼 망중립성 원칙의 정립,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규제를 마련,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과 보호를 둘러싼 논의들이 향후 뜨겁게 달아오를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다. KISO저널

6)정갑윤등 10인, 2011. 5. 20 제출 법률안

7)허원제의원등 11인 2009. 7. 17 제출 법률안, 이낙연의원등 11인 2011. 6. 17 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2011. 10. 13 제출 법률안 등이 있다.

8)온라인광고자율심의기구 설립과 관련한 진성호의원등 13인 2009. 2. 10 법률안, 선정적이거나 혐오광고의 규제에 대한 여상규의원등 10인 2011. 3. 11 법률안,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온라인광고협회 설립에 대한 한선교의원등 11인 2011. 4. 13 제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9)유기준의원등 16인 2010. 7. 12 제출 법률안, 박대해의원등 11인 2010. 7. 21 법률안, 김금래의원등 15인 2010. 9. 9 제출 법률안이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

개인정보 유출과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12.08.)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과 일본 나아가 유럽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배경과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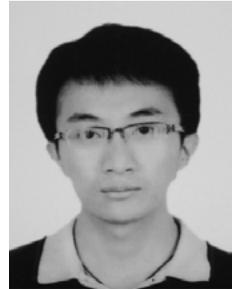
·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주요 이슈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Ding Duo (丁鐸)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중국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말 중국의 인터넷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많은 대형 사이트들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으며, 그 수는 무려 수천만 명에 달해 그로 인한 사회질서 혼란과 대중의 이익이 크게 위협을 받았다. 중국은 관련 정책이 있긴 하지만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실천하고 추진해야 한다.

한편으로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초안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아직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 법규가 형성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은사(個人隱私)에 부속되었을 뿐이다.¹⁾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의 입법 중에서는 개인정보, 개인자료 또는 개인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개인은사라는 용어를 항상 사용하고 있다.

1.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의 현황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는 세가지의 변천이 있다. 첫째, 음사(陰私)로부터 은사(隱私)라는 용어에로의 변천이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 중국의 법적 문서 중에 최초로 "陰私(음

1) 張新室: <隱私權的法律保護>, 群眾出版社, 2006年版, 第16-17面.



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법판결에서 공개되지 않는 개인사항을 표현하였다. 1996년에 채택된 "중국인민대표대회"의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구형사소송법 제117조 등의 "陰私(음사)"가 "隱私(은사)"로 바뀌었는데 이는 "陰私"라는 용어가 정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한다.²⁾ 2005년에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국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문제를 제출하고 학계에 위탁하여 법의 초안을 제정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개인정보라는 용어의 정식적이고 통일적인 사용이 시작되었다.

둘째,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면제로부터 적극적 보호에로의 변천이다. 1980년 이전에 중국의 법적 규범은 개인은사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법판결 절차에 관계되는 개인정보에만 국한하여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³⁾ 그 보호하는 기본방식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재판공개예외로 취급하여 공개를 면제하였던 것이다.⁴⁾ 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보호방식인 것으로 제공되는 보호는 그저 초급적인 보호인 것이다. 1980년대에 전국인대에 의하여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잠정조례" 그리고 사법부, 최고법원, 최고 檢察院,公安부가 연합하여 발표한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함에 있어서 몇 가지 구체적 규정에 관한 연합 통지"는 "변호사가 사건서류를 열람하면서 접촉한 국가기밀과 개인은사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의 단계가 소송기간으로부터 소송기간 외로 넓혀졌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자가 법원내부인원으로부터 변호사에게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의 방식이 소극적인 공개의 면제로부터 책임자에게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비밀을 보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⁵⁾

셋째, 공법보호로부터 사법보호에로의 변천이다.⁶⁾ 1988년 민법통칙을 집행하는 것에 관하여 약간의 의견은 "타인의 은사를 공개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추화시킴으로써 또 모욕, 비방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공민명예권의 침해행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년에 채택된 侵權責任法에서 은사원은 공민의 명예권으로부터 구분되고 독립적으로 규정된다.⁷⁾ 이러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1980년대의 사법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로부터 사법절차 외의 개인정보까지 확대되어 명확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다음으로, 은사권에 대한 존중의무가 이전의 직무상 의무로부터 비 직무상 의무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⁹⁾ 마지막으로, 침권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수익하는 공법책임 - 행정 또는 형사 책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직접 수익하는 민사책임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¹⁰⁾

II. 중앙정부 차원의 규범¹¹⁾

중국은 아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헌법에서 공민의 기본

권리 부분에 공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항이 있고 侵權責任法 제2조에서 프라이버시는 구체적인 인격권으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다.

헌법 제38조에서 "공민의 인격존엄은 피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민에 대해 모욕·비방·무고·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9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해받아서 아니 된다. 공민의 주택에 대한 불법 수색 또는 불법 침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40조에서 "공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안전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로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통신 감찰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든지 공민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항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과 규범에 헌법적 기초 또는 근원의 역할을 한다.

민법통칙 제101조에서 "공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가진다. 공민인격의 존엄성은 법률로 보호되며 모욕이나 비방 등의 방식으로 공민이나 법인의 인격이 손해되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에서는 인격존엄에 대하여 세부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며, 프라이버시도 언급되지 않았다.

최고법원은 "민법통칙시행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140조에서 "서면·구두 등 방식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선전하거나 혹은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비하 및 모욕, 비방 등 형식으로 타인명예를 훼손, 추락시켜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경우 공민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1993년에 공포된 "명예권 사건의 심사관련 약관문제에 관한 해답" 제7조 3항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여 그의 명예훼손을 초래한 경우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프라이버시권과 명예권이 동일한 범주로 혼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997년에 공포된 「컴퓨터정보네트워크 국제인터넷 안전관리방법」 제7조와 실시방법 제18조에서도 "사용자의 통신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률로 보호되며, 인터넷으로 악의정보를 살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도용하여 정보를 퍼뜨리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사생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2000년에 제정된 「인터넷전자서비스관리규정」 제12조에서 "전자게시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의 비밀을 지켜야하며, 인터넷

2) 劉太剛: <中國個人情報保護研究>, 中國人民大學學報, 2007年, 7月號.

3) 전게서

4) <司法部關於律師參加訴訟的幾項具體規定的聯合通知>, <http://www.people.com.cn/item/flfgk/gw-yfg/1981/113901198101.html> 2012년 4월 10일 검색.

5) 齊愛民. < 華人民共和國個人信息保護法示范法草案學者建議稿>. 河北法學, 2005, (6)

6)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보호는 공법적인 보호의 범위에 속하는데, 한편으로, 중국에서 헌법은 직접적으로 사법이행에 도입되지 않다. 공민이 헌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은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헌법에서 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개인은사에 관한 조항은 헌법에서 공민 기본 권리 부분의 제38조, 제39조, 제40조이다. 제8쪽 참조.

7) <中華人民共和國侵權責任法>,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305260. 2012년 4월 10일 검색.

8) 王利明: <人格權法新論>, 吉林人民出版社, 2005年版, 第345面.

9) 전게서.

10) 전게서.

11) 효력적인 차원으로부터 보면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a. 법률. 제정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 b. 사법해석. 제정권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속한다.
- c. 행정법규. 제정권이 국무원에 속한다.
- d. 국무원의 부령. 제정권이 국무원의 각 부, 위원회 및 국무원의 직속기관에 속한다.
- e. 지방적인 법규. 제정권이 省級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비교적 큰 도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 f. 지방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규범. 제정권이 省級 인민정부 및 비 교적 큰 도시의 인민정부에 속한다.

가입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인터넷 이메일서비스관리방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동 조치는 컴퓨터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 유포, 음란물 등 불법정보 및 기타 피싱(Pishing)과 같이 사기의 수단으로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허락 또는 등록을 요구하고, ISP 등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락을 얻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메일 송수신을 매개하는 이메일 서비스제공자 및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후 2009년 2월 11기 전국인대 제7차 상무위원회에서 「형법수정안(7)」이 통과되면서 개인정보 불법이용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즉 동 법 제253조에서 "국가기관 혹은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의 종사자들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이행 혹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한 주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혹은 불법 제공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구속 또는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정보를 판매 또는 불법제공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 국가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에서 ‘정보안전조례(信息安全條例)’를 마련하고 국무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주요 내용은 누출되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제반 안전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 국가공업정보화부는 「정보안전기술 및 개인 정보보호 지침(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이제 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지침으로서 총 다섯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 등이다.

2012년 3월에 중국공업정보화부 관련 부처 책임자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개인정보 보호’ 국가표준인 ‘정보안전기술 공급 상용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가 제정되어 현재 절차에 따라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표준은 개인정보 보호의 관련 개념들을 정의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수집, 가공, 이동, 삭제 4개 절차에 있어서 정보의 주체, 관리자, 획득자, 독립평가기구의 역할과 직책을 명확히 하여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행동 준칙을 제공하고 있다.

III. 지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문적인 규범¹²⁾

(a) 대련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개인정보보호규범」¹³⁾

대련시는 기타 도시와 비교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하에 개인정보보호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005년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개인정보보호규범」을 제정하여 1년간 시험행을 거쳐 개정 및 보완

한 후 대련 시정부의 인정받고 해정규범이 되었다. 2007년 2월 공식 발효되면서 비교적 완벽한 개인정보보호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평가방식, 인력관리와 사고신고 그리고 처리방식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b) 요녕성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개인정보보호규범」¹⁴⁾

요녕성 정부는 2007년부터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분야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2008년 6월부터 적용범위를 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요녕성의 개인정보보호규범은 대련시 규범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c) 상해시 「개인정보관리방법」¹⁵⁾

2004년 상해시 정부는 공포된 「개인정보관리방법」은 기존의 내용에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관리자의 의무 등 추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주체의 경우 지배권, 문의와 철회권을 보유하고 개인정보관리자는 고지, 비밀유지 및 정확성 확보의 의무가 있다. 또한 기존의 다른 규범보다 개인정보데이터의 관리를 더욱 중시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트관리, 물적 환경관리, 작업환경관리, 정보안전관리 등내용을 포함하여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상해시의 개인정보관리방법은 향후 기타 지역이나 기관의 개인정보보호규범 제정에 있어 모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d) 섬서성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개인정보보호규범」¹⁶⁾

섬서성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개인정보 보호규범」은 2009년 9월 섬서성 소프트웨어산업 협회에서 마련했다. 보호원칙은 요녕성의 보호 원칙과 달리 수집 및 사용 원칙, 안전보장원칙, 정보주체 권리원칙, 내용에 대한 지속 갱신원칙에 따라 기업이나 사회단체가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관리자의 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부분에 같이 규정하고 있다.

(e) 청두시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법」¹⁷⁾

청두시의 관리방법은 OECD 지침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가공, 보관, 전송, 검색 등을 통해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 사회

12) <http://www.pipa.gov.cn/NewsDetail.asp?ID=759>. 2012년 4월 10일 검색.

13) <http://www.pipa.gov.cn/NewsDetail.asp?ID=851>. 2012년 4월 10일 검색.

14) <http://wenku.baidu.com/view/31062efe04a1b0717fd5ddee.html>. 2012년 4월 10일 검색.

15) <http://www.chinaacc.com/new/63/74/117/2006/7/wa000161010121760026928-0.htm>. 2012년 4월 10일 검색.

16) <http://www.sxsa.org/down/html/?42.html>. 2012년 4월 10일 검색.

17) <http://www.cdsia.org.cn/view.php?tid=57&cid=18>. 2012년 4월 10일 검색.

단체 등 독립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개인정보보호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내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요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합격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합격증"과 CDPIPA(Chengdu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Assessment)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이 관리 방법은 신청조건, 신청, 심사 및 접수, 자격관리, 인증 및 마크,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f) 선전시 「개인정보보호조례」¹⁸⁾

2010년 5월 선전시 5기 인대(人大) 제2차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조례' 입법제안이 채택되면서 현재 선전시 변법제위원회는 관련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선전시 인대는 상기 조례의 입법을 예비입법리스트에 포함시켜 향후 입법 작업이 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지방법규로서 전술한 지방규범보다 더 높은 효력을 갖고 있고 빠르게 통과될 경우, 향후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V.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나타난 주요한 문제점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입법은 아직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는 전문 법령이 아닌 많은 관련법령에 산재되어 있으며, 일부 도시 혹은 지역의 경우에는 규범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a)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체계 미비

중국은 아직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법령이 없다. 둘째, 분야별 입법 즉 분야별 연관법령에 산재되어 있다. 예컨대 사법, 인권, 통신, 금융 등 각 분야별 법령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입법 상황의 혼란은 물론 효율적인 법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지역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제정한 규범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민간단체는 정부의 위임으로 개인정보 보호평가의 감독책임도 담당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지역규범의 가장 큰 문제는 적용 범위의 지역적 한계와 구속력이 떨어지는 점이다.

(b)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 미비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는 단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의 실시과정에 관련 대상자의 의무이행과 의무위반, 그리고 권리보호를 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평가, 감독, 고충처리, 추진 등의 부분체계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²⁰⁾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분야별로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포괄적인 관찰 대상과

강력한 권한과 권위를 가진 개인정보 보호기관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없다. 이와 같이 산재해 있는 법률과 비체계적인 입법의 문제로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독기관의 부재 등으로 다양한 법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²¹⁾

(c) 지역규범의 불확실성

실제적으로 대부분 지역규범의 경우 제정목적은 소프트웨어 외주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예컨대 대련시는 소프트웨어 외주산업의 수출대상국의 개인정보 보호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외주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섬서성의 경우에도 제정목적이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외주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외주산업의 활성화와 국제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개인정보 침해문제로 인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보호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기본적인권리와 자유와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프라이머시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원국 간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후에 국민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개인정보에 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간의 요구는 중국에서의 입법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에 대하여갈수록 많은 긍정과 보호를 하게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도는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KISO저널

18) http://wb.sznews.com/html/2012-01/09/content_1895992.htm. 2012년 4월 10일 검색.

19) 洪海林, "个人信息的民法保护研究", 박사논문, 西南政法大学, 2007年.

20) 周汉华,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专家建议稿)及立法研究报告》, 法律出版社, 2006年第1版, 第37页.

21) 전게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선 효 정
에딘버러대학교 과학기술혁신학
박사과정

서론

유럽은 나치주의, 스탈린주의 등의 거대한 감시와 통제사회의 역사적 배경하에 전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광범위한 정보보호법제를 구현하고 있다.¹⁾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제고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반영되어 있으며, 정보보호침해에 대한 처벌과 개인의 시정요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화 되어왔다.

그러나 유럽 역시 정보의 네트워크화가 제기한 기존 법 체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예외 일 수 없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저장 능력은 아날로그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에 따른 정보 조합 및 프로파일링(profiling)을 통한 정보의 통합, 영구에 가까운 기록의 저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가혹할만한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각국 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e-비즈니스의 발전으로 고객에 대한 점점 많은 정보를 기업이 소유하게 되었으며, Web 2.0 기술을 통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가 양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데이터화의 경향을 낳게 되었으며, 익명성 구현의 어려움과 같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게 되었다.

본 글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독일과 영국 2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현대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위협에 유럽의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본다.

1.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별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던 유럽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1980년대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유럽이사회는 OECD의 “사생활보호와 개인 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과 유사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계되는 개인의 보호에 관한 조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을 1981년 채택하였다. 유럽각국은 입법수준이 각기 다른 국내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시행해왔으나, 국제무역 활성화의 요구에 따라 유럽이사회는 지역 내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1995년 10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각료회의(European Council)는 ‘개인정보처리관련 개인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이동에 관한 지침’(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이하, EC 지침)을 채택, 1998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개별 법안 및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완해가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강력한 보호정책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익을 정보보호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삼고 있다.²⁾

1) EC 지침

(1) 주요내용

- 목적 : EC 지침 제1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사생활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보호를 보장과 EU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함께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정보보호의 원칙 : 제6조에서는 (i) 정보 주체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ii) 정보를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 (iii)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며 필요 이상의 지나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iv) 개인 정보의 최신 정보로의 갱신 및 (v) 필요이상기간동안 저장 금지를 밝히고 있다.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조건을 밝히고 있으며,³⁾ 제8조에서는 인종, 정치적 견해, 종교 및 철학적 믿음, 노동조합 가입여부, 건강 및 성생활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민감한 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확실한(explicit)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비회원국으로의 정보전송 : 개인정보를 비회원국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적정한 경우에만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원칙에 따라 이 원

1) Lilian Edwards, “Privacy and Data Protection Online: The Laws Don’t Work,” in Law and the Internet, ed. Lilian Edwards and Charlotte Waelde (Hart Publishing (UK), 2009), 453.

2) Diane Rowland, Information Technology Law, 4th ed. (Abingdon, Oxon; New York: Routledge, 2012).

3)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정보주체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공공이익에 필요한 경우, 정보관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



칙에 준수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적정성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이전을 시행하고 있다.

(2) 관련 이슈

-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의 균형 : 유럽 지역 내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일화를 통해 원활한 개인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 경제성장, 과학기술발전 등과 같은 초미의 관심사 앞에 개인의 정보보호가 얼마나 우선시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⁴⁾ 특히, 많은 개인정보침해관련 사고가 정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정보처리의 감시와 개인의 자유보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목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딜레마 앞에서 정부가 개인의 자유보장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둘지 역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⁵⁾ 이와 같은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유럽 각국은 정보주체, 정보 처리자, 보호대상에 대해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EC지침이 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화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다.⁶⁾

- 익명화의 어려움 : 정보처리 시 정보주체의 승인 의무화는 EC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이 승인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승인이어야 하지만, 디지털환경에서 이러한 승인은 점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많은 인터넷 이용자는 쿠키 등으로 자신의 인터넷 활동의 궤적이 남게되며, 별개로서는 전혀 의미없는 정보는 프로파일링을 통해 신분이 들어나는 재식별(re-identification)의 문제를 낳고 있다.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스스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새로운 문화가 양산되면서 개인정보의 익명화는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개념의 익명화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의식자체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⁷⁾

- 정보의 해외전송 : 디지털기술의 국경을 뛰어넘는 속성에 따라 정보의 해외전송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C지침의 정보 해외전송에 관한 엄격한 방침은 국제적인 차원의 조화를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낙관과 함께,⁸⁾ 개인의 시정요청관련 조항 및 시행방안의 미흡함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⁹⁾

2.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독일은 전체주의 정권하에 개인정보의 남용을 경험한 국가만큼 개인정보처리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1970년대 헤센주가 세계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화한데 이어, 1977년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DSG, Bundesdatenschutzgesetz)가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체계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각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연방



및 각주에 개인정보보호관과 개인정보보호기구설립으로 이원화된 법 시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에 기존의 법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1991년 개정되었으며,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준칙의 반영을 위해 2001년 다시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1)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

(1) 주요 내용

- 주요 목적 : (i) 권리침해 당사자의 방어 및 법적 보호와 자신에 관한 정보처리의 우선권을 정보주체가 가질 것, (ii)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기초를 제공한다.

- 개인정보보호 대상 : 개인정보보호 개인관련 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에만 보장하며,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법인의 정보는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인정보처리의 허용 요건: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되,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정보처리를 허락하는 협정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처리를 정당화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특정형태(자필 서명이나 법적으로 유효한 전자서명)의 서명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 연방개인정보보호관은 연방의 공적 부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기타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연방개인정보보호법과 기타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한 역할을, 감독관청은 연방개인정보보호법과 기타 관련법규의 시행을 감독한다.

(2) 특징

- 강력한 법체계에 의한 정부의 감시 제한 : 나치주의, 공산주의 및 억압적인 정부를 경험한 독일은 일찍이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럽 민법(civil law)의 전통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법 지배를 추구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감시를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원화된 통제감독기관은 법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법 시행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간과한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모·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및 조직운

4) F. H. Cate,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Brookings Inst Pr, 1997)

5) D. H. Flaherty, Protecting Privacy in Surveillance Societie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weden, France,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2)

6) LRDP KA_TOR Ltd and Centre for Public Reform,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t Approaches to New Privacy Challenges, in Particular to the Ligh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January 2010, <http://ec.europa.eu/justice/policies/privacy/studies/index_en.htm.>

7) Paul Ohm, "Broken Promises of Privacy: Responding to the Surprising Failure of Anonymization," UCLA Law Review 57 (2010) : 1701.

8) Viktor Mayer-Sch nberger, "Generational Development of Data Protection in Europe," in Technology and Privacy: The New Landscape, ed. PE Agre and Marc Rotenberg (MIT Press, 1997).

9) Rowland, Information Technology Law, 165.

명의 변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방식 및 자발적 정보보호 감독시스템 방식을 도입하는 시장경제적 도구의 이용방식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을 통한 정보보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되고 있다.¹⁰⁾

- 정보의 자기결정권 : 독일에서는 자기의 정체성 및 인격의 완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자신만의 고유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삶을 영위하는 핵심이라 보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개인정보관련 헌법조항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이는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이 주창한 것으로서, 1983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인구조사과정에서 개인관련정보에 대한 질문에 답할 의무를 부과하는 인구조사법에서 내린 위헌결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¹¹⁾ 자신에 관한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의 기본 조건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정보의 자기 결정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보처리에도 개인정보의 무제한적인 수집, 저장, 사용 및 제공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함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개인의 존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고유식별이 가능한 시스템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¹²⁾

3.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995년 EC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1984년 자료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4)를 개정한 1988년 자료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을 마련하고, 2000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1) 1998년 자료보호법

1998년 자료보호법은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2003년 디지털기술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유럽연합의 전기통신사생활법(PECR,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s)의 내국법인 전기통신사생활법(PECD,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으로 확대되었다.

(1) 주요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원칙: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정보주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히 민감한 정보의 경우 목적에 부합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처리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고지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목적과의 적절한 관련성을 가진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는 금지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필요한 경우 최신성을 확보해야 하며, 수집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도 내에서만 정보를 보유하고, 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정보처리자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재구성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의 발전 및 보호수단의 비용에 관계없이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 : 정보 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에게 통보하고,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하며,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 이전할 경우 반드시 적절한 수준을 보장한 경우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2) 관련 이슈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는 9·11 테러를 발단으로 기존 정부의 보안과 사생활보호의 근본적 가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 사이의 균형이 점점 정부의 보안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¹³⁾ 다수가 중복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니 블레어 정부가 수립한 정보보호문화는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안전하지 못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¹⁴⁾ 특히 2007년 영국 국세청(HMRC,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은 영국인구의 반에 가까운 2천5백만 명의 개인신상정보를 담은 두 개의 디스크를 분실한 사건과 2008년 국방부 소유의 노트북 400개가 유실된 사건은 거대한 정보구축시스템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코드의 변경을 통한 '사생활보호의 설계(privacy by design)'의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¹⁵⁾ 이는 추후에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스템 설계 초기단계에 사생활보호를 포함시키자는 것으로서, 정보의 최소화를 꾀하고, 익명성 보장을 법적인 원칙으로 삼는 것을 모델로 한다.

결론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효과적인 시행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례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기술과 부차적인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광범한 법체계와 강력한 법 시행으로도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보안에 대한 경각심에 의한 신원자료의 확보를 통한 정보보호는 오히려 정보의 집중화로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취약하게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¹⁶⁾ 강력한법체계를 통해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자체가 문제라는 일부 학자의 지적과 같이,¹⁷⁾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혼자있을 권리'¹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법체계 이외의 다양한 방식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SO저널

10) Alexander Roßnagel,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 2004, <http://www.fes-korea.org/media/Publications-kor/Achieves/Rosnagel_PSPD2004-kor.pdf.>

11)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 제 1권, 1999

12) G. Hornung and C. Schnabel, "Data Protection in Germany I: The Population Census Decis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25, no. 1 (2009): 84-88.

13) Judith Rauhofer, "Privacy and Surveillance: Legal and Socioeconomic Aspects of State Intrusion into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Law and the Internet, ed. Lilian Edwards and Charlotte Waelde (Hart Publishing (UK), 2009).

14) Nick Clark and Robert Verkaik, "Internet Privacy: Britain in the Dock," The Independent, April 15, 2009, <<http://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internet-privacy-britain-in-the-dock-1668844.html>.>

15) A. Cavoukian, "Privacy by Design," Take the Challeng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of Ontario, Canada (2009), <<http://www.ipc.on.ca/images/Resources/2009-06-23-TrustEconomics.pdf>.>

16) B. Schneier, Beyond Fear: Thinking Sensibly About Security in an Uncertain World (Springer, 2003)

17) J. Rauhofer, "Privacy Is Dead, Get over It! 1 Information Privacy and the Dream of a Risk-free Society,"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17, no. 3 (2008): 185-197.

18) S. D. Warren and L.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 no. 5 (1890): 193-220.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김 상 미
나고야대학교 교수

1. 개요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은 크게 공공 및 민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2003년 5월에 제정·공포되어 일부 시행되었고 2005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 취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일본에서도 사업자에 의하여 고객정보 등이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이나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둘러싼 사건들이 사회문제화 되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또한 개인정보는 그 성격상 일단 잘못 취급된 후에는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IT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도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지만, 동법의 전면 시행 후 약 7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도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더해 동법에 대한 과잉반응이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 일으키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및 시행 실태에 관하여 개관하



고, 전기통신사업 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의 특징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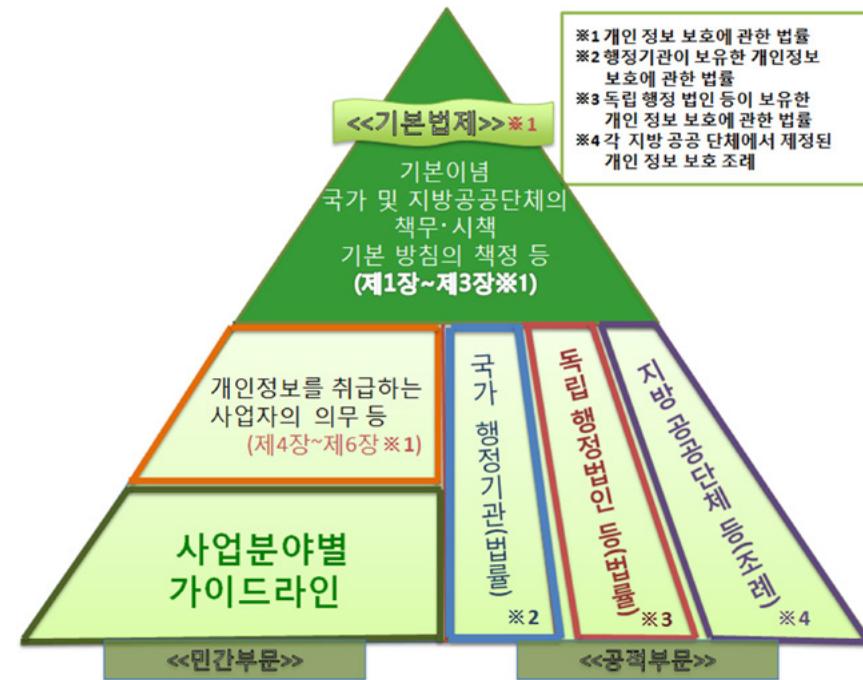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 제3장까지는 <그림>에서 피라미드의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공 및 민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존중의 이념 하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적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동법의 기본 이념이 명기되어 있다(제3조).

제4장에서 제6장은 <그림>에서 피라미드의 좌측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민간 부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모든 사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분야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처는 각 사업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성격, 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

적으로 그 분야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그림>에서 피라미드의 우측 아래에 해당하는 공공부



<그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
(일본 소비자청 '알기 쉬운 개인정보보호의 형태' 팸플릿을 참조하여 재구성)

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이거나 국립대학법인 등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대조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제2조 제1항). 따라서, 사망한 사람에 관한 정보나 법인에 관련된 정보(예를 들면, 기업명이나 기업의 자본금과 같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반면 영상이나 음성도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인정보를 「개인데이터」라 한다.(제2조 제4항)

4.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4장부터 제6장(이하 ‘의무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민간 부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전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의무규정의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의 민간사업자를 「개인정보취급사업자」라고 하는바, 5,000명을 초과하는 개인정보를 종이매체 또는 전자매체를 막론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단, 사적인 목적으로 연하장을 보내기 위해 개인PC로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경우 등은 의무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일본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등과의 관계조정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라 하더라도, ① 보도기관의 보도활동 ② 저술활동을 업으로 삼는 자의 저술활동 ③ 학술연구기관 등의 학술연구활동 ④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⑤ 정치단체의 정치활동 등 다섯 부문 주체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는 위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50조, 제35조 참조).



5.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1)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특정(제15조) 및 목적 외 이용의 금지(제16조)

개인정보 취급시에는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또한 특정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2) 적정한 취득(제17조), 취득에 있어서의 이용목적의 통지 등(제18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신속하게 이용 목적을 통지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에게서 직접 서면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미리 본인에게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개인데이터 내용의 정확성의 확보(제19조)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데이터를 정확하고도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데이터 입력시 대조·확인, 기록 사항의 갱신, 보존 기간의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조치(제20조)

개인데이터의 누설이나 손실을 막기 위해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의 예로는 보안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자의 임명, 내부관계자의 접근 관리, 시스템·기기 등의 정비나 사업자 내부의 책임체제의 확보 등이 있다.

(5) 종업원 및 위탁 상대에 대한 감독(제21조, 제22조)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종업원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

을 해야 하며 또한 개인데이터의 취급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의 예로는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위탁계약서 명기, 재위탁시의 감독 책임 명확화 등이 있다.

(6) 제3자 제공의 제한(제23조)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개인데이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 ① 법령에 의한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조회가 있었을 경우 등
- ②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 대규모 재해나 사고 등의 긴급시 환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환자의 정보제공 의뢰가 있는 경우 등
-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보건 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의료기관에 암진료 정보 제공 의뢰가 있는 경우 등
- ④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세무서 등으로부터 사업자에 대해 고객정보 제공 의뢰가 있었을 경우

위탁의 경우, 합병 등의 경우 및 특정한 사람과의 공동이용의 경우로서 일정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이용목적의 통지 및 개인데이터의 개시, 정정, 이용정지 등(제24조 내지 제27조)

보유 개인데이터의 이용목적, 공개 등에 필요한 절차, 불만사항 접수처 등에 대해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보유 개인데이터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정정 등을 하여야 한다.

(8) 불만사항의 처리(제31조)

본인으로부터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만사항 접수 창구의 설치 등 체제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6. 사업분야별 가이드라인 : 전기통신사업 분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사업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는 의료, 금융 등 총 24개 분야에서 37개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바, 이 글에서는 통신비밀을 포함한 전기통신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개관한다.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일본헌법 제21조 제2항의 '통신의 비밀은 침범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있는데 동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하는 통신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는 지침의 성격과 사업법에 근거하는 통신의 비밀보호에 관한 구체적 지침의 성격을 병행하고 있는바, 제1장(제1조~제3조)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등을, 제2장(제4조~제22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공통 원칙을, 제3장(제23조~제29조)에서는 통신내역 등 전기통신사업 분야에 특유한 정보의 취급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업법 규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규정에 대해서 개관하고자 한다.

(1) 적용 범위(제1조~제3조)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법의 적용 대상과 같으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루는 개인정보를 폭넓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사업법의 적용대상보다 확장되어 있다.

첫째, 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 경영에 관해 등록 혹은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나(사업법 제2조 제5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을 행하는 자」로 확장되었다(제2조 제1호). 즉, 신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사람도 가이드라인의 대상이다.

둘째, 가이드라인은 사업법의 대상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서비스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가 규율의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셋째, 사업법에서 「이용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사이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나(사업법 제18조 제3항),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폭넓게 「전기통신서비스이용자」로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3호). 한편,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법에서의 「이용자」와 구별하여 이를 「가입자」라고 한다.

(2)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공통 원칙(제4조~제22조)

가이드라인의 제4조에서 제22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의 공통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통원칙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장 제1절(제15조~제36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를 답습한 형태이지만, 전기통신사업이 고도의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몇 가지 사항에서 그 내용을 확장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4장 제1절이 정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는 취득 단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인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는 취득 후 단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그 규율의 대상이 확장되었다.

둘째, 가이드라인은 제4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취득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소위 민감(sensitive) 정보(사상, 신조 및 종교에 관한 정보나 인종 등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취득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는 가이드라인의 독자적 규정이다.

셋째, 가이드라인은 제10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원칙적으로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해당 보존 기간의 경과 후 또는 해당 이용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소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는 가이드라인 독자 규정이다.

넷째, 가이드라인 제11조 제2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안전관리 조치를 강구할 때에 「정보통신 네트워크 안전·신뢰성 기준(1989년 우정성고시 제73호)」 등의 기준을 활용해야 할 것을 명기하고 있는 점도 가이드라인의 특색이다.

**7. 맺음말**

일본에서 사업자들의 정보누설 방지를 위한 대책이 진보한 점이나 누설 사건의 당사자가 문제를 신속히 발표하는 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일체 행하지 않는다는 충분한 검토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기업활동에 활용하지 않는 행태가 일반화되고 있어 법조문의 형식적 이해로 인한 과잉반응이 문제점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사건 사고시 병원에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대하여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거나, 반사회나 학교현장에서 명부, 사진첩, 전화번호부, 졸업앨범 등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본사회 및 문화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KISO저널

참고문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청 (구)국민생활국웹페이지
<http://www.caa.go.jp/seikatsu/kojin/houritsu/index.html>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2009. 9. 1); 소비자청 (구)국민생활국웹페이지
<http://www.caa.go.jp/seikatsu/kojin/kakugi2009.pdf>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 이미지(2009. 9. 1); 소비자청 (구)국민생활국웹페이지
<http://www.caa.go.jp/seikatsu/kojin/houtaikei.pdf>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이슈



나 현 수
KISO 정책운영실 선임연구원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과정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IT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 나갔고, 전 세계에서 초고속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된 인터넷 강국으로 거듭났다. 다른 선진국보다 빠른 인터넷 보급과 활용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통에 의한 피해였다.

2000년대 초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처럼 널리 부각되지 않았던 때에,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활용하였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스팸메일, 전화 마케팅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심지어 음성전화사기 같은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의 개인정보의 이용을 규율하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시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어 왔다. 또한 각 분야별로 개별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항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개별법 체계에서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의 문제가 존재하고, 각 개별법 별로 규율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할 일반법적 법률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제정은 2003년 전자정부 30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어, 정부에서 입법논의가 제기되었고, 학계의 주목을 받아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 열

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안,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와 개인정보의 이용·제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표류하였다. 이후 2006년 전문가, NGO, 사업자가 참여하여 세 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작성하였지만, 정부와의 입장차이로 17대 국회에 폐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이 계속 표류중인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점차 늘어나게 된다. 2008년 2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옥션이 해킹으로 개인정보 1,081만건이 유출되는 사건, 2008년 4월 SK브로드밴드에서 600만명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불법 전달한 사건, 2008년 9월 GS 칼텍스에서 내부 직원이 대가를 목적으로 1,12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18대 국회에 상정하고(2008년 11월),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2008년 8월), 민주당 변재일 의원(2008년 10월)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한다. 이러한 3개의 안을 중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다. 본 글에서는 위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율대상이 넓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는 각 법률이 규율하는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주어졌고, 그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법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규율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사업자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법 적용을 받던 50만개의 기관·사업자에서 300만개의 기관·사업자가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대부분의 정보보호 개별 보호 법령이 컴퓨터로 관리되던 문서를 보호 대상으로 삼았던데 반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다.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등의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15조), 개인정보의 이용 역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제공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수집 목적에 비추어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게하여(법 16조)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의 사용에 강한 제한을 두었다. 원칙적으로 제3자 제공·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경우 혹은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제공자, 이용목적, 제공 항목, 개인정보 제공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려 승인을 얻을 경우에만 제3자 제공·목적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내용이 동의 이후 개인정보 제공자, 이용목적, 제공 항목, 개인정보 제공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법 17조, 18조).

또한 동의 절차도 법정화하여, 홍보·판매 등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다(법 22조). 이는 경품 제공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한 취지로 이해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는 조항(법 24조)을 두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허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18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한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확대함으

로서, 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자도 I-Pin 등 우회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회원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개인정보의 관리를 위한 조항도 법제화되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법 2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며(법 30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법 31조).

한편, 2006년 개인정보 보호법 합의안에서 삭제되었던 영향평가제도는 다시 추가되었다. 단 공공기관만이 영향평가 의무대상이며, 민간기관은 자율시행으로 규정되었다(법 33조).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과 관련된 부분도 강화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법 34조), 개인정보 열람권(법 35조), 정정·삭제권(법 36조)을 규정하였다.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규정도 신설되어,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법 49조)을 법정화하였다. 이러한 분쟁조정은 기존 각 특별법에 산재하던 분쟁조정보다 강화된 것으로 집단분쟁조정을 규정하였고, 그 효과도 약한 ‘민사상 화해’가 아닌 강한 ‘재판상 화해’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소송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단체소송을 규정하여 피해 구제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단체소송의 경우 ‘권리침해 중지·정지 단체소송’

으로 국한하였으며, ‘재산피해 구제 단체소송’은 도입되지 않았다.

기타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법 6장).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촉진·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법 13조)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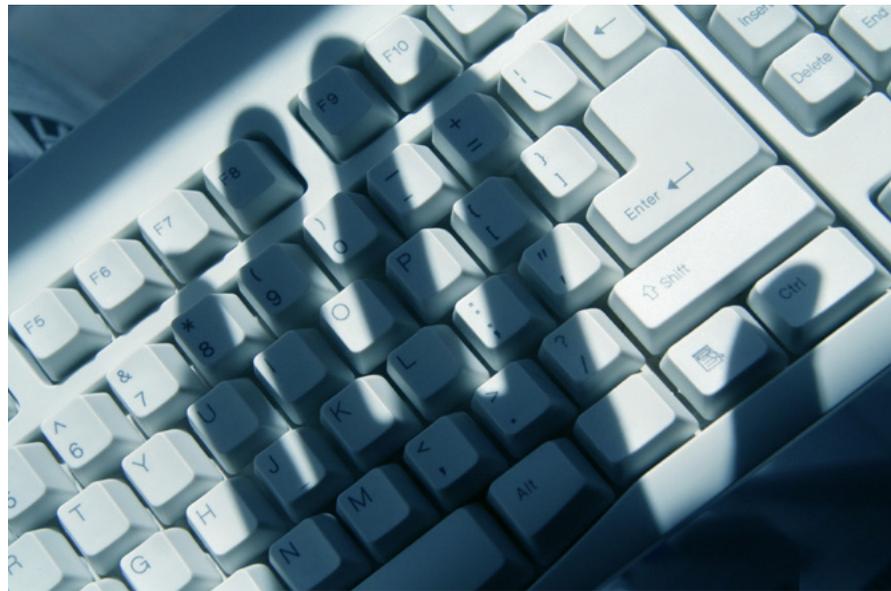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비평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의 법적 공백을 최대한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개인정보



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법 2조)” 로 명확히 규정한 점과, 개인정보 통제권을 법정화 하였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영향평가제의 실시 등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터넷 분야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제점도 지적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국가기구가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또한 자율의 영역까지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인터넷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무관청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겹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도 아직 개인정보와 관련된 조항이 남아 있으므로 이중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수집금지를 국가가 강제하는데, 제한적 본인확인제, 공직선거법상의 본인확인 의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섯다운제, 각종 전자상거래법 등과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다. 즉, 본인확인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 개인 고유 식별번호의 취급 금지는 비용이 드는 대체 수단을 강요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4.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후 인터넷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한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넥슨 메이플 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다. 위 두 사건은 유사점이 많다. 우선, 사업자가 고의·중과실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고, 외부 해커들의 소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과, 이 또한 지능형 지속가능 공격(APT : Advanced Persistent Threat, 이하 APT)이라는 신종수법을 통해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APT는 특정한 서버를 공격하기 위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공학적 방식을 활용한다. 기술적 장치로 보안 장치를 마련하였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커스터마이징 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따라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

(1) 넥슨 메이플 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넥슨은 국내 온라인 게임 매출 1위 회사로, 카트라이더, 메이플 스토리 등 다양한 게임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2011년 11월 18일 넥슨이 제공하는 RPG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백업서버의 해킹을 통해 1,320만명의 이름, ID,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위 사건은 외부의 공격으로 컴퓨터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2개의 커스터마이징 된 백도어 프로그램이 침투하여 해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넥슨은 이를 2011년 11월 24일 발견하고, 정보주체에 통보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2012년 6월 7일 넥슨측이 법률상의 기술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검하였다. 넥슨의 혐의는 공인되지 않은 자체 백신을 사용한 것과, 외부침입감지시스템 등을 시제품을 사용하여, 기술적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었다.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0조 1항 5호에서도 기술적 조치중의 하나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을 의무로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로 규정함으로써 백신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자에게 공인된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약적이며, 보안의 측면에서도 알려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해커들에게 약점이 노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본 사건과 같은 APT 공격의 경우 커스터마이징 된 해킹 프로그램의 침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공인된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향후 검찰과 법원이 관련 부분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SK커뮤니케이션즈 nate.com 개인정보 유출사건

SK커뮤니케이션즈는 국내 3위 포털업체로 nate.com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싸이월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이다. 2011년 7월 26일 네이트 및 싸이월드 서버가 해킹을 당하여 회원 전체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실명, 혈액형, 비밀번호 등의 모든 개인정보였다.

이후 수사에 따라 밝혀진 바에 의하면 SK커뮤니케이션즈의 사건은 해커들이 유명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이스트소프트의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하여 자동으로 해킹프로그램이 깔리도록 하였고 SK커뮤니케이션즈의 일부직원들이 이에 감염되어 해킹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프로그램들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사무실에서만 동작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한다.

본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형법적 책임이 아닌 민사적 책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 중 일부는 집단 소송 모임을 만들고,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중,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4월 26일 네이트 회원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식재판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재판 결과가 향후 상급심이나, 유사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킹의 경우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단체 소송은 도입하였지만,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단체소송은 도입되지 않았다. SK커뮤니케이션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는 외부의 해킹 공격 혹은 APT 공격에 대해 사업자의 정보주체에 대한

민법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결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APT와 같은 사회공학적 방법과 우회적 방법을 통한 해킹을 통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중요해지고, 기업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의도적인 침해보다 외부의 해킹에 의한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넥슨 사건과 SK커뮤니케이션즈 사건은 모두 APT 유사 공격에 의한 해킹시도로 볼 수 있고, 넥슨 사건은 형사적 측면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 사건은 민사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의 결론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모두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의 결론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KISO저널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인터넷 이용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이슈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문에서는 개정 법 중 일시적 저장과 복제,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제 방안인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관해 담아 보았다.

한미 FTA에 따른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일시적 복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1.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경위

한국과 미국 사이에 2006년 2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2010년 12월 3일 최종 타결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 10월 12일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년 11월 22일에는 우리 국회를 통과하였다. 한·미 FTA 협정은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의무 사항 중에는 우리의 기존 저작권법과 합치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 없는 부분, 기존 저작권법의 해석에 따라서는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부분, 추가적인 입법이 우리 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 등 다양한 성질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협정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거쳐, 2011년 6월 30일 먼저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 시행일 2011년 7월 1일)을 공포하였다.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현행 저작권법)은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법 개정 사항(한·EU FTA와 한·미 FTA의 공통사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 후 2011년 11월 2일 한·EU FTA에 반영되지 못한 한·미 FTA 의무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고, 2011년 11월 22일 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한·미 FTA 협정이 발효하는 2012년 3월 15일 시행되었다.

이번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현행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양 협정 사이의 공통사항은 이미 반영이 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일시적 저장의 복제 해당 명문화, 저작권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나머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



오승중
홍익대학교 교수
변호사

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규정과 그 밖에 그 동안 현행 저작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개정 내용

- 그 주요 개정 내용 및 구체적인 조문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일반적 규정으로서 공정이용(fair use) 제도를 도입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었던 배타적 권리(배타적발행권)를 모든 저작물 등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발행권 설정에서 출판권 설정을 제외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 저작권접권(방송 제외)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 한·미 FTA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 요건을 추가하고, 권리주장자의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 위조 및 불법라벨의 유통, 영화 도촬 및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 발생 전 등록을 법정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연장하였다.
-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법의 내용 중 인터넷 이용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시적 복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일시적 저장과 복제

(1) 입법의 배경

한·미 FTA 협정은 컴퓨터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복제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구적 복제는 물론이고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도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학계에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자료 검색 행위마저 복제권의 규율 대상이 되어 정보 접근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게 된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었다²⁾. 이에 반하여 찬성하는 측에서는 영구적 저장과 일시적 저장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 기준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일시적 저장의 형태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이 주된 이용 형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복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한 이상 우리 저작권법에 일시적 저장을 수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2) 복제에 대한 정의 규정

종전 저작권법은 복제를 규정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도 나온 바 없다. 다만, 일시적 저장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그동안 우리 저작권법 학계나 실무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을 뿐이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한·미 FTA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굳이 우리 저작권법에 일시적 복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둔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제 개념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측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를 염려도 있고, 또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대상에서 면책시키는 규정 역시 명문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개념 정의에 명문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에 대한 정의규정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서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추가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3) 일시적 저장에 대한 면책 규정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보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가 들고 있는 논거처럼,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자료 검색 행위마저 복제권의 규율 대상이 되어 정보 접근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현재의 정보통신기술 아래에서는 컴퓨터를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보는 정의규정을 두는 이상, 그와 더불어 통상적인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 침해로부터 면책하는 제한 규정을 적절하게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개정법은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었다.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여 면책하는 입법 형식으로는,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 버퍼 캐싱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과, 적법한 저작물 이용에 관련된 일시적 저장을 면책시키는 것과 같이 일시적 저장에 특화된 포괄적 면책규정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개념에 수용함으로써 인하여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 뜻하지 않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법은 포괄적 면책규정을 두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한다³⁾. 개정법 제35조의2 본문은 일시적 저장의 발생이 기술적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단서 부분은 합법적 이용에 부수하는 일시적 저장만이 면책이 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다. 따

1) 한·미 FTA 협정 제18.4조 제1항.

2) 저작권위원회,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 저작권연구자료 51(2007), 73면 참조.

3) 저작권위원회, 전거서, 87-88면.

라서 저작권 침해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이나 이용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시적 저장의 면책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는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제5장의2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일반 저작물과 달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위 제35조의2를 신설하는 것과 아울러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규정 중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하였다.

4. 법정손해배상제도

(1) 입법의 배경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민사적 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피해액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입증하거나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

증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미리 규정된 범위 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정손해배상제도이다⁴⁾.

한·미 FTA 협정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를 고의 또는 과

실로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금전적 배상인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하여,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같은 조 제2항),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126조)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에서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저작권 등록과 같은 형식적 절차의 이행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이 문제로 된다.

(2) 개정법의 내용

개정법은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규정을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과는 달리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고 하한선은 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침해 억지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인데, 하한선을 책정할 경우 자칫 침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비례성을 현저히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건수가 아닌 침해된 저작물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온라인상에서의 침해는 일반적으로 많게는 수만 건의 저작물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한선을 정할 경우 개별 저작물로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침해된 저작물이

4) 저작권위원회, 전거서, 186면.

5) 한 미 FTA 협정 제18.10조 제6항.



대량인 관계로 침해자가 감당하지 못할 거액의 손해액이 정해지는 등 합리적인 손해배상액과의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면 오히려 불합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⁶⁾. 그리하여 개정법은 미국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선은 정하지 않고 상한선만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제125조의2 제1항은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까지로 정하고 있다.

개정법의 같은 조 제2항은, “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외부적·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편집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다수의 소재 저작물 또는 원저작물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는 각각의 소재 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개정법 규정에 따라 법정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소재 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다과에 관계없이 편집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저작물로 보아서 하나의 법정손해배상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개정법의 같은 조 제3항은, “저작재산권자들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물 사전 등록을 법정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법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처분권주의⁷⁾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금액) 내에서만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기만 하면 법원이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하게 된다. 결국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사자가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특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 당사자가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3) 기대 효과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 산정 및 그와 관련한 증거 확보의 곤란함을 보완하여 침해를 억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적 해결방식이 아닌 민사적 해결방식의 활용이 증대될 수 있다. 셋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당사자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⁸⁾ KISO저널

6)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1. 12.), 43면.

7) 소송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및 절차의 종결을 당사자의 처분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심판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것보다 적게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서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문화체육관광부, 전거서, 42면.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잘 알려진 '유튜브(YouTube)'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분쟁의 경과와 관련 법규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에 관한 물음을 던진다.

유튜브의 저작권 분쟁 동향



오 세 은
NHN 법무실 변호사

유튜브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저작권 침해로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관련 소송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1심에서 유튜브에 대한 사전 필터링 의무가 인정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에서 침해 게시물 삭제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고전해 온 유튜브에 지난 5월 29일 프랑스 파리 민사법원의 결정은 고무적인 결과였다. 파리 민사법원은 프랑스 민영 TF1 TV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소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TF1은 2008년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이 권리를 보유한 방송 프로그램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튜브 및 유사 동영상 사이트인 데일리모션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TF1은 이들 사이트에 저작권 직접침해를 주장했을 뿐 아니라 또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필터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천8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파리 민사법원은 유튜브가 유럽법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 중단시스템 도입 등 최소한의 의무이행 사실을 보아야 하는데 유튜브의 경우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이행이 인정되어 방조책임이 없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특히 유튜브가 적용하고 있는 Content ID 등 권리보호 조치를 검토한 뒤 이러한 의무를 합당한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사건을 기각하고 이례적으로 원고 측에 대해 1억 원 가까이 되는 유튜브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데일리모션에 대한 소송 역시 유사한 결론이 예상되며 판결은 9월에 예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5일,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이 비아콤 등 방송사와, 미국 프로야구(MLB)가 각각 구글과 유튜브에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재심을 위해 사건 환송결정을 한 바 있다. 비아콤, 파라마운트 등 4개사는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2007년 3월, 구글과 유튜브에 대해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MLB 등 역시 구글과 유튜브에 대해 해당 년도 5월, 동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두 건의 소송 모두 권리자 측은 유튜브가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소송에서의 관건은 유튜브가 미국 저작권법 (DMCA)의 서비스 제공자 면책

조항(Safe Harbor)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 두 건의 관련 소송에서 2010년 6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병합 판결로 구글과 유튜브 측의 “저작권 비침해 확인”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요청을 모두 승인하며 유튜브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유튜브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DMCA상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인 소위 Notice and Takedown으로 불리는 게시중단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자 면책 요건이 만족되므로 일체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특히, P2P와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제공의 서비스는 명백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며 침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비아콤 등과 MLB측 원고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항소법원은 이번에 1심의 판결을 일부 파기 결정하게 된 것이었다.

DMCA의 Safe Harbor 면책 요건 상,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던 경우는 면책이 부여되지 않는데, 항소법원은 해당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침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정침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 항소법원은 1심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에서 유튜브나 구글이 특정침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약식판결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사건을 1심으로 환송 결정을 내렸다. 1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미 구글과 유튜브 측의 내부 이메일, 보고서 등이 공개된 바 있었으며 내부 담당자간 오간 이메일에서 유튜브 사이트 상에 침해 콘텐츠가 75~80%를 차지하고 있는 점, 크레딧스위스의 감사 보고서 상 적법 콘텐츠는 10%에 불과한 점 등 언급된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MLB측에서 특정 침해 게시물에 대해 조치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었다. 항소법원은 위 사실만으로 ‘특정침해 건에 대한 구체적 인식’ 여부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특히 게시중단 요청이 이미 된 바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유튜브가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인지, 해당 콘텐츠가 침해물로 특정된 본건 소송 대상 저작물 중 하나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의 결정이 유튜브가 DMCA의 면책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다거나 방조침해가 성립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판단에 있어 중요 요소인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이트상에 침해 게시물이 빈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침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요한다고 하여 사업자 측면에서 유리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구글과 유튜브 또한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해당 취지의 항소심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 이번 유튜브에 대한 항소심 결정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인터넷 비디오 콘텐츠 공유 사이트인 Veoh에 대해 이용자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결과가 이미 작년 12월 내려진 바 있어 유튜브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이 인정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것이다. Veoh 사건은 DMCA의 Safe Harbor 규정의 개별 면책요건에 대해 최초로 심도 있게 판단한 사례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Veoh는 유튜브처럼 이용자들에게 웹사이트에서 비디오 공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침해물 업로드 금지에 대한 방침을 공지했고 자체적으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6만개 이상의 동영상 상 사진 삭제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니버설 뮤직은 Veoh의 저작물 보호 방침이 지나치게 미약할 뿐 아니라, Veoh 측이 불법 복제물이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정황상 알고 있었어야 했다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버설은 Veoh에 대해 저작권 직접침해 및 침해 방조를 주장했다. (Veoh 시스템 상 이용자가 올리는 동영상은 플래쉬 형태의 파일로 재 복제 되는 점에 직접침해 주장).

2009년 9월, 1심 법원은 Veoh의 자체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침해물 차단 노력과 게시중단 절차를 통한 조치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서비스 제공자 면책요건을 만족한다고 보아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직접침해 역시 Safe Harbor 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있으나 Safe Harbor 규정은 직접침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니버설은 항소심에서 Safe Harbor 요건 만족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각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며 주장을 배척했다.

(1) 저장행위여부

유니버설: "Veoh의 서비스 중 저장된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이용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스토리지 행위가 아니므로 게시판 유형 서비스 제공자 (by reason of the storage at the direction of a user) 로 볼 수 없음"



⇒항소법원은 게시판 유형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주도한 저장행위에 대해 사업자에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스트리밍 등 저장된 콘텐츠 접근·사용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함

(2) 침해인식요건

유니버설: "면책 요건 중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을 것이 요구되는 바, Veoh는 자체 필터링, 게시중단 요청 등을 통해 사이트상 침해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음"

⇒ 항소법원은 일반적인 인식이 아닌 특정 침해 동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았다 하여 권리자의 관련된 모든 저작물을 검색, 필터링 할 의무는 없음을 분명히 함

(3) 금전적 이익과 관리권한

유니버설: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할 것이 면책 요건중 하나. Veoh는 침해행위에 대한 통제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이익을 얻고 있음"

⇒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통제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한미 FTA의 결과로 인해 국내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역시 DMCA와 동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을 단순도판, 캐싱, 호스팅 (게시판 유형), 정보검색의 네 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게시판유형에서의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 요소는 국내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복제, 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단순한 침해 인식의 가능성으로 서비스제공자 면책이 부인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Veoh 및 유튜브 판결로 국내 규정 해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Veoh 사건은 국내 저작권법 상의 '저장행위 여부', '침해인식요건', '금전적 이익과 관리권한' 등 모호한 면책요건의 해석에 있어 향후 참고가 될 수 있는 판례라 할 수 있다. KISO저널



국내 SNS 가입자 수가 400만명을 넘어서고 사회 전반에 걸쳐 SNS가 활발하게 활용됨에 따라 그 역할과 올바른 이용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SNS의 강한 영향력을 고려한 국가규제의 필요성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SNS 심의와 관련하여, 불건전정보 심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SNS 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첫 접속차단

심의번호 유해-11-016-030, 이 번호가 부여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2011년 4·27 재보선과정에서 SNS를 통한 투표독려글이 확산된 것을 소개하면서 SBS <8시 뉴스> 방송에 트위터 @2MB18nomA가 노출되었는데,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신고를 했다. 2011년 5월 9일 출범한 제2기 방통심의위는 정식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상임위원 3명이 '심의번호 유해-11-016-030'을 건박하고 중요한 안전이라고 심의해서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대해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을 10개 망사업자들에게 요구했다.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 한 일이 SNS에 대한 심의다. 사실 @2MB18nomA 접속차단 이전에도 제1기 방통심의위 시절 북한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접속차단 요구를 하였지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우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2MB18nomA사건은 국내에서 벌어진 첫 SNS 접속차단이고, 그 적법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URL(URI)이나 twitter ID가 유통되는 정보인가?

방통심의위가 불건전정보(또는 일반유해정보)심의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서는 모든 정보가 아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및 시정요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대상인 불건전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여야 한다. 그런데 URL은 인터넷주소인 Domain과 이용자의 ID(해당 이용자를 위한 디렉토리, 경로)가 결합하여 웹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의 하나이다. 그래서 '웹자원' 자체는 '유통'되는 정보일 수 있지만, 그 웹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인 URL은 특정 웹자원을 유통시키기 위한 정보체계(syntax)로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니다. ID도 마찬가지다. ID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정보'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자 사이에서만 '이용'될 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일 수 없다.



양 홍 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 이용자색션에 기고되는 글은 당기구의 공식의견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인터넷에 관한 이용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表現과 表示의 차이

그런데 트위터의 경우 독특한 문제가 있다. 트위터사는 아래 <그림>과 같은 개인 프로필 페이지에 @ID라는 형식으로 사용자의 ID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글을 올릴 때 그 사람의 ID와 이름이 표시되고 이를 리트윗하게 되면 그 글을 쓴 사람의 ID가 @ID형태로 언급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트위터 ID가 '웹자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그림> @2MB18nomX의 프로필 페이지

그러나 트위터 프로필 페이지나 트윗에 @ID형태로 해당 사용자의 ID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트위터사의 독특한 서비스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용자가 그 제공여부를 통제할 수 없고 트위터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이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도 특정인의 @ID만 따로 유통시킬 수 없고 그 사용자의 트윗을 리트윗하거나 그 사용자의 ID를 자신이 직접 입력해서 언급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트위터사가 제공하는 @ID는 '웹자원' 속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정보지만, 유통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트위터사가 제공하는 @ID는 특정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표시'일 뿐 그 사용자의 글, 그림, 음성 등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ID가 표시되는 상황을 이용해 ID 자체로 특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 상황(트위터의 경우 트위터사의 서비스 형식)이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므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것에 불과한 트위터 ID를 심의대상으로 할 수 없다.

2MB18nomA는 욕설이 아니다!

2MB18nomA 중 '18'은 욕설이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로 발음할 때 비로소 '십팔', '열여덟', '일팔' 등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nom'도 콩글리쉬(?)로는 '놈'으로 읽을 수 있지만, 미국식으로는 [nám], 영국식으로는 [nóm], 프랑스어로는 [no]으로 읽힌다. 그래서 "이명박

XXXX”라는 낱목이 아니라 다양한 발음의 조합 중에 욕설과 동일하게 발음할 수 있다는 점에서 2MB18nomA 자체는 직설적인 욕설이 아니라 영문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만든 말장난, 언어유희다.

언어유희이기 때문에 욕설로 볼 수 없지만, 욕설로 보더라도 ‘과도한 욕설 등 지속적인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호 바목)에서 말하는 ‘과도한 욕설’로 평가할 수 없다. 또 @2MB18nomA는 이 명박 대통령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기발한 발상으로 이 자체는 혐오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대통령 개인 또는 그 정치행태에 염증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 쾌감을 주는 정보로 누구나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보(오히려 누구에게만 불쾌감을 주는 정보가 아닐까?)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방통심의위는 2MB-18nomA가 직접적인 욕설로 과도하다거나 불쾌감을 준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은 정치적 표현이다!

욕설은 같은 말이라도 상황, 대상, 쓰임에 따라 저주와 악담의 쌍욕, 비아냥거리고 조소의 방귀욕, 애칭과 유희의 익살욕, 꾸지람과 차별의 채찍욕 등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도 대통령의 처신·무능·부패·실정 등에 대한 비판, 대통령에 대한 분노·미움·실망·질책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은 쌍욕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배설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한 쌍욕에서 나름의 정치적 의미를 찾아내고 자신을 가다듬는 경계로 삼아야 한다. 더구나 @2MB18nomA는 접속차단 당시 프로필 페이지에 이름으로 ‘MB OUT’을 내걸고 대통령이나 여당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표현을 많이 했는데, 방통심의위에서는 한 심의위원이 대통령을 ‘아버지’에 비유하면서 아버지에게 욕할 수 있냐는 투로 말하기도 하고, 한 심의위원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법에 없는 잣대를 들이대 표현이 아니라 표시에 불과한 2MB18nomA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니 무조건 차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여러모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대통령은 필시 욕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욕먹을 짓을 하면서도 국민에게 욕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인데도 방통심의위는 @2MB18nomA 접속차단을 감행해 표현의 자유가 아닌 대통령을 지키는 감시기관(Presidential Watchdog)임을 자임하게 된 것이다.

방통심의위에 의한 심의영역 확장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의 위헌성에서 비롯된다. 방통심의위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문제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 뭘 의미



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함으로써 방통심의위가 필요하다면 사실상 모든 정보를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방통심의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심의대상인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외에 소위 ‘불건전정보’ (또는 일반유해정보)라는 심의영역을 개척해 수많은 표현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결정을 하고 있다. @2MB18nomA도 불건전정보 중 하나인 ‘욕설정보’로 취급되어 차단될 수 있었다. 결국 @2MB18nomA에 대한 접속차단은 법률이 아닌 방통심의위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법률이 아닌 방통심의위의 자의에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줘 불건전정보 심의의 위헌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2MB18nomA 접속차단을 비판한 @2MB18nomX에 대한 접속차단

한편, 이런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비꼬기 위해 @2MB18nomX를 개설하였는데 방통심의위는 @2MB18nomX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을 결정했고 역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MB18nom’이 아니라는데도 차단한 것이다. ‘2MB18nom’을 거론하기만 해도 불경인가? 그렇다면 @2MB18nomA 접속차단을 거론한 수많은 인터넷언론기사는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인지! 현재 @2MB18nomX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방통위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최근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2호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했던 시정요구가 합헌(헌재 2012. 2. 23. 2011헌가13)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불법정보가 아닌 불건전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위헌인지, 불건전정보의 하나인 ‘욕설정보’에 관한 심의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2MB18nom’ 사건을 계기로 점점 독선을 넘어 야만으로 치달아가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에 경종을 울리는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대한다. KISO저널



다수의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유입,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 등 우리나라는 점차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민을 배려한 정책적, 사회·문화적 고민도 눈에 띈다. 과연, 국내 다문화사회의 현실과 국민들의 인식수준은 어떠할까? 인터넷 공간은 이와같은 문화공유와 확산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외국인 유학생이 바라본 국내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인터넷 공론장 제노포비아 확산에 대한 소고



Li Wen Guan(李文光)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전체 인구수의 3%인 140만의 외국인이 체류하는 한국은 단일민족에서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그 중 단순기능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은 수로 전체 이주자의 61%를 차지했지만, 유학, 생산숙련직, 단기취업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이 불가피하게 되어 2020년에는 이주자가 인구의 5%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은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초기부터 다문화사회였던 미국마저 15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심각한 문화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십여 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 한국은 과연 급속히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체계적인 재한 외국인 정책의 시도, 여러 단체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형식의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TV 교양·시사 프로그램, 심지어 예능프로그램까지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서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진정성과 노력을 볼 수 있고, 그간 폐쇄적이었던 국민성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따른 편견과 인종차별주의가 다문화사회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이주자를 높이 평가하고 선진국 문화에 치우쳐 있으며(황정미·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이른바 후진국의 이주자를 낮게 평가하는 편향적 시선이 보편적 현상이다. 김희자(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미국백인이 가장 가깝고 친밀했으며, 미국흑인-중남미인-동남아시아인-중국인-중동인-아프리카 흑인-일본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를 감안하면 선진국에 대한 뚜렷한 지향성과 후진국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묘사된 외국인의 이미지와도 일치된다(김경희, 2009)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 공론장에서 격화되는 인종차별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최초 이주민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이자스민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공격을 받았고 네티즌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 비난을 퍼부으며 한동안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또한 4월 초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이 중국 조선족으로 밝혀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사건 자체에 대한 논의를 떠나 중국인과 조선족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확장되었으며 일부 네티즌은 전문 사이트와 게시판을 개설하여 갖은 욕설과 모욕으로 도배를 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건보도가 구체화되면서 결국 동남, 서남 아시아의 불법체



류자, 외국인 노동자 전체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논란으로 번져졌다.

그 동안 중국, 동남아 등 일부 후진국 국가 이주민에 대한 제노포비아 현상은 최근에 들어서 국적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한 미군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 살인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도망 온 외국인 학원 강사, 러시아 등 각국 유학생의 마약흡인 사건 등 개별적인 외국인 범죄사건이 조명되면서 인터넷에서의 서양인 혐오 현상이 증폭했고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어느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은 전국 학원의 강사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명의 불법 원어인 강사를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강사가 추방당한 사례도 있었다. 물론 대부분 외국인의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인터넷 공론장에서 범죄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건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국가, 민족 비난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혐오가 무분별하게 증폭될 우려가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한국 속담이 있듯이 외국인 혐오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 만하다. 이자스민 사태가 불거지면서 필리핀 민영방송 ABS-CBN은 극단적인 네티즌의 의견만 삽입하여 한국 최초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으로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이 당선되었지만 한국 인종차별주의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부정적인 면만 부각 보도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소수의 극단적인 네티즌이 표출하는 외국인 혐오가 국가 간의 적대감정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한국 언론들은 2012년 프랑스 대선에 주목했다. 그 원인으로 두 명의 한국계 입양인이 대통령 당선자 올랑드 대선 캠프에서 맹활약하면서 장관 후보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그 중 플뢰르 펠르랭이 중소기업·디지털경제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한국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한국의 여왕”, “한국인의 성공 스토리” 라는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성공하면 한국인의 자랑으로 여기는 반면, 한국의 국민이 된 외국인인 이자스민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이중성으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다문화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이주민들은 정치적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더 나은 다문화사회를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가에서는 다문화사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캐나다는 2001년과 2005년 연이어 피난민으로 캐

나다에 입국한 두 명의 이주민을 연방총독에 선임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문화의 용광로로 불리는 미국은 다문화사회 일차원적인 정치통합 단계를 넘어서 이주민 정치인의 역동적인 정치역할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 성김은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 받으며 앞으로 이주민 정치인들의 새로운 정치 사명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기회를 이주민 정치인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한국도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는지는 역시 미지수이다.

여기서 조심스레 이민 1.5세 한국계 조승희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언급해보고 싶다. 사건 발생 후 범인이 재미동포로 밝혀지자 한인 사회는 범인의 한국국적에 주목하여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깊은 우려와 두려움에 빠졌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인은 총기사건은 국적과 무관하며 조승희 개인적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성숙한 반응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수원 살인사건의 범인이 중국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언론에 부각되는 것을 보고 중국유학생으로서 몹시 당혹스러웠다.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고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재한 중국인의 한국적응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현실로 이어가는 과정에 인터넷 공론장이 큰 역할을 했다. 인터넷에서는 오원춘 사건보다는 국가와 민족이 이슈화 되면서 중국, 중국계 조선족에 대한 공격과 모욕의 글로 격렬한 비방이 이어졌다. 심지어 전문 디스사이트¹⁾나 게시판이 설치되어 전체 중국인, 조선족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이 난무했다. 이처럼 사회약자와 후진국 이주민의 사건에서 사건 자체가 아닌 민족성을 거론하며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월 18일 다문화가족정책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은 글로벌·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서는 안되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자스민의 인종차별적 공격과 수원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인신공격으로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인터넷 상에서 특정 인종·지역의 차별과 비하발언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종차별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 카페, 사이트 등을 중점 모니터링해서 해당 게시물, 블로그, 카페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 '삭제' 또는 '이용해지' 등을 결정했다.

정부 정책이 빠르게 이동하는 다문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지속된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에 이주민에 대한 관용적인 방향으로의 인식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순혈주의를 고수해 온 한국에서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민족 이민자로 구성

된 미국은 "용광로 사회"라고 불리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뜨겁게 공존하지만 하나의 "아메리칸 드림"에 도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로 약진하는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다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족의 다양성을 내포하며 시대에 맞는 한국성, "한국의 새로운 꿈"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는 중국 성어가 있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에 시달렸던 아픈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 제노포비아 공격을 한다는 것은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모습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불과 십여년전만 해도 한국은 이민 송출국이었다. 1962년부터 근 100만에 달하는 한국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동포도 현재 75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발전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관용의 태도로 다문화 집단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포용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KISO저널

참고문헌

- 김경희(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한국방송학보, 23(3), 7~46
 김희자(2008).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 제9집 1호, 255~282
 황정미·이명진·최현·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07-19-02

인터넷 자료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958514&clck=olink|article|defaul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8/201204180157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8/2012041801749.html
<http://news.donga.com/3/all/20120404/45268967/1>
<http://news.donga.com/3/all/20120520/46380159/1>
<http://news.donga.com/3/all/20120602/4670243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2&oid=038&aid=0000375719>
http://www.mooyenews.kr/sub_read.html?uid=81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42466>

1) 디스사이트(diss site) : diss는 '경멸하다'라는 뜻으로,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경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뜻함



이번 호부터 국내외 IT 관련 주요 학술 모임을 찾아가 이들의 활동, 목표 등을 소개하는 '학술탐방' 코너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학술탐방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T 정치연구회

1. 연구회 역사

IT정치연구회는 2002년부터 인터넷이 형성한 새로운 미래 정치현상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위해 정치현상에 관심이 있는 교수, 연구원, 기자 등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매월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한국정치학회 산하 소연구회로 발족하였다.

연구회의 설립목적은 ① IT를 매개로 촉발되는 새로운 정보사회 및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 ②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월례세미나 개최 ③ IT 정치 관련 연구 프로젝트 참여 ④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토론 ⑤ 세미나 결과의 학술 출판 및 연구성과물 축적 ⑥ 학문후속세대 연구자 교육 및 양성 등이다.

2002년 출범과 동시에 매월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다양한 정보사회의 현상을 공동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내부에서의 연구성과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2012년 4월부터는 장소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초사옥으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총선과 대선을 고려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가 정당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2.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로는 인터넷이 형성한 새로운 미래 정치현상으로 초기에는 거버넌스, 규제, 사회운동, 인터넷과 선거, 네트워크 및 연구방법론, IT정책 등의 주요 사회과학 이슈와 노사모 등 네티즌의 역할, 인터넷 선거운동의 특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2010년부터 스마트폰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바일기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자 종래의 인터넷 기반의 정치활동 분석에서 탈피해 SNS가 정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있다. 2010년에는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 등



이 원 태
KISDI 미래융합연구실
그룹장



SNS의 특성을 규명하였고, 2011년에는 SNS를 통해 본 트위터상의 소통의 특징, 중동의 민주화혁명에서 보여준 SNS의 매개역할, 법적 관점에서의 SNS, 연결망 및 인과지도 등을 이용한 정치적 행태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2년에는 온라인 정치참여의 촉진요인 분석, 빅데이터의 특성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온라인 정치활동, SNS를 통해 본 4.11 총선 및 12월 대선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회원 현황

IT정치연구회는 현재 60명의 연구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기술정치학을 전공하는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 등 공공기관의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화진흥원 등에 근무하는 연구원, 신문사 기자, 변호사,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중인 연구자, 네이버·다음 등 포털 및 인터넷 기업의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연도	일시	주제	발표자
2010년	3월	한국 포털의 오픈 정보 서비스 특징과 전망	권순선 (NHN 아키텍트) 정철 (다음미디어)탐장
	4월	미디어 연구자 입장에서 바라본 정보사회	이호규 (동국대 신방과 교수)
	5월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고영혁 (HR맨파워그룹 탐장)
	6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현황 및 과제	김창희 (KISO 위원장)
	9월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	금해성 (SBS 선임연구원)
	10월	과학사회와 크로스하다	정재승 (KAIST 교수)
	11월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류신문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이규정 (고려대 정의과 강사)
	12월	북한의 모바일 정책	구갑우 (경남대 교수)
2011년	3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본 트위터 상의 소통의 특징	김기훈 ((주)사이람 대표)
	4월	민주화혁명과 SNS의 정치적 매개역할론: 2011년 중동의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조희정 (국회입법조사처)
	5월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셜커머스	김상순 (변호사)
	6월	연결망 분석의 사회학적 기초 Sociological Basis of Network Analysis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교수)
	9월	한국 IT산업의 멸망	김인성 (오픈소스 개발자)
	10월	인과지도를 이용한 디지털 제너레이션의 정치적 행태 분석	김강훈 (ETRI 선임연구원)
	11월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 나타난 SNS의 영향력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12월	참여지향적 시민과 혼합형 거버넌스	윤성이 (경희대 정의과 교수)
2012년	3월	온라인 정치참여: 시민참여의 촉진요인	구자혁 (서울대 강사)
	4월	빅데이터로 보는 4.11 총선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5월	4.11 총선에 나타난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활동의 특징과 의미	이현아 (서강대 대학원)

<표> 2010~2012년 월례발표회 개최 현황

4. 최근까지의 활동

매월 개최되는 월례세미나(여름·겨울방학 제외)에는 20~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학술회의와 저술활동을 병행하여, 학문적인 업적을 축적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월례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약 50여 편(발표자 6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IT정치학 관련 저서 집필, 한국정치학회·국제정치학회의·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정보사회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인터넷 정치, IT정치, IT정책, 전자정부 관련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논문 발표 및 토론자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기타 각종 언론매체 등의 인터넷 정치·IT정치와 관련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칼럼이나 논설 등을 기고하고 있다. KISO저널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저 자 : Barbara van Schewick

출 판 사 : The MIT Press

출판연도 : 2010년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책의 시작부터 저자는 정성을 다해 인터넷 디자인 원칙(Design principle)으로서 모듈(modularity)과 레이어링(layering), 그리고 단대단 원칙(end-to-end argument)을 약 70페이지 가량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공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이다. 상세하게 설명된 인터넷 디자인 원칙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의미 부여와 함께 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설명된다. 즉, 인터넷의 개방성은 인터넷 디자인 원칙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망중립성과 관련된 논의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증가능한 내용으로 발전한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망사업자가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디자인 원칙과 개방성을 침해하는 것은, 사회전체에 혜택보다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망사업자의 개방성을 침해하는 동기와 능력을 고려할 때 시장의 자율보다는 정부의 간섭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서문에서 저자가 감사의 표현을 한, 이 책에 대하여 토론하고 코멘트를 해 준 수많은 동료학자들의 명단이다. 한국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는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이용대가의 분담논의', 'mVoIP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화 논의', 소위 '국익논란' 등 넉센스 같은 토론에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큰 그림에서의 인터넷의 개방성과 이용자들이 누릴 문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미디어 정책으로서의 망중립성 논의가 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함께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니 무척 부러웠다.

이 책은 과거에 저자가 썼던 학술논문들을 재구성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건조하고, 총 400페이지의 분량으로 하룻밤에 읽기도 어렵다. 하지만 저자의 논리들이 FCC 오픈인터넷규칙 보고서에서 상당히 인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책을 읽는 것은

국내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를 풍성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읽을 챕터와 순서를 정하여 주기도 하였으니, 목적에 따라 좀더 쉽게 읽을 수도 있겠다. KISO저널





인터넷 분야 논문 소개

1. 황용석(2012). 표현매체로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법률적·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106-129.

황용석(2012)은 이 연구에서 SNS의 환경적, 기술적 특성을 개관하고 과거의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관한 국내 정책, 법원의 입장, 판결의 의미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규제가 행정기구 및 법·제도에 다소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조 및 행정적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SNS를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의 관점을 적용하고 민간 차원의 자율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2. 박영미·이희숙(2012). 인터넷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실태와 소비자의 태도. 『소비자문제연구』, 41호, 203-225.

박영미와 이희숙(2012)은 이 연구를 통해 첫째,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다수의 쇼핑몰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고지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응답자들이 이들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 측면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보완 및 강화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3. 최윤정·이종혁(2012). 토론속도주의가 숙의적 (deliberative) 인터넷 토론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388-417.

최윤정과 이종혁(2012)은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토론 중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토론속도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빨리빨리’ 문화가 토론 과정을 무시하고 의견 다양성을 무시하는 토론속도주의를 통해 발현되며, 토론속도주의는 의견을 교류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토론의 과정을 매개하면서 의견 수렴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빨리빨리’ 문화가 토론의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화적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KISO저널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 사용의 급증 등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기술에 관해 설명하고,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 역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이 원 태
KISDI 미래융합연구실
그룹장

최근 '1인 미디어 시대' 라고 할 정도로 개인화된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들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의 대중화에 따라 이용자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저장, 공유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화된 서비스들도 넘쳐나고 있다. 아마도 소셜-빅데이터 분석, '소셜-로컬-모바일(SoLoMo)' 기반 인터넷 서비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은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 환경의 도래를 상징하는 핵심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방대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개인화된 소셜 검색 서비스 출시에 이어 개인 정보통합에 기반한 타겟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첫째, 먼저 빅데이터는 SNS를 비롯한 각종 웹서비스를 통해 취합한 막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각각의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용도 등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기술 및 관련 서비스는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서 소셜분석(social analytics) 시장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일찍이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시작한 SAS, IBM, HP 등과 같은 글로벌 IT사업자들은 이미 국내 진출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글의 빅쿼리(Big Query), 아마존의 AWS(Amazon Web Service) 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확산은 소셜미디어 여론조사 수요 확대도 가져왔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한국 등에서는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게시물과 코멘트, 링크 등을 수집 분석하려는 소셜분석 서비스들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그런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소셜(social), 위치(local), 모바일(mobile) 즉 SoLoMo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뿐만 아니라 사진/동영상의 얼굴인식 기술과 결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예컨대 구글맵 상에 이용자 주변에 있는 여성의 위치와 SNS상에 공개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주는 위치기반 애플리케이션인 Girls Around Me,



페이스북 프로필과 사진을 연결해서 친구를 태그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인 Klik, 한 장소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으면 낯선 사람이라도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는 새로운 유형의 SNS인 COLOR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실시간(real-time) 웹서비스 기술은 음악, 동영상 등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매체환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SNS의 대중화로 주목받는 차세대 핵심 인터넷 기술이다. 최근 실시간 스트리밍 웹서비스의

확산은 이른바 '소비자 클라우드(Consumer Cloud)'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큰데, 드롭박스, 아마존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등과 같은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 애플의 iCloud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온라인 동기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인화된 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의 새로운 발전양상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회적 역기능 논란을 초래하면서 기업과 시민사회간의 갈등도 촉발시키고 있다. 아마도 최근 구글이 유튜브와 구글+ 및 구글 검색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를 통합·연계 관리하겠다는 새로운 개인정보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페이스북도 연대기순으로 이용자의 활동내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될 수 있는 프로필 기능 'timeline'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의한 잇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예컨대 미국 시장조사업체 AYT Market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45.4%가 개인화 검색(personalized search)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며, 지난 2월말 미국 시장조사업체 Pew Research의 조

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기존 친구 목록을 삭제하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덜 노출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정책에 대해 구글 이용자들의 집단적 저항 및 대안찾기 노력의 일환으로 신생 검색서비스들(즉 Blekko와 DuckDuckGo)이 등장했는데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및 가치체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웹1.0의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도 매우 취약한 약관 및

동의기반에서 비교적 일방적으로 수집되는 관행이 지배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범위를 더욱 폭넓게 요구함과 동시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발적 선택권 및 통제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즉 진화하는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는 수동적 보호 및 외부적 규제의 대상에서 점차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의 영역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공개과정 및 공개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의사(동의)가 얼마나 반영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최근

인터넷 서비스의 검색, 선택, 수용, 제작, 유통 등의 과정에 개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개인의 결정력이나 제어력은 서비스에 따라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수준이 제고되고 개인정보의 공개범위에 대한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자율적 합의체계가 보다 명료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소셜-빅데이터, SoLoMo 서비스, 실시간 웹서비스가 IT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겠지만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한 사업모델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도 모르게 사적인 정보가 '빅데이터'의 일부로 축적되고 의식하지 못한 곳에서 해당 정보가 기업의 수익화에 이용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이 방대한 이용자 규모 및 정보를 앞세워 시장 장악에 나설수록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수익 창출과 이용자 권익보호 사이의 합리적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더욱 적극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와 소비자들의 협력적 역할도 요구된다.

정부, 기업, 이용자 모두가 프라이버시 등 새로운 정보사회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KISO저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등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NEWS 1

자살예방을 위한 포털의 자율적 노력

지난 6월 7일, KISO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의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결정'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결정은 주요 포털사가 이용자 신고 등으로부터 자살 관련 게시물 노출 또는 커뮤니티 운영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인터넷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원칙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다.

KISO 정책위원회는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의 중요성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끝에 본 정책결정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KISO 회원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주요 포털은 자살 시도의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자살'·'동반자살' 키워드의 검색 시 관련 상담센터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KISO저널

NEWS 2

신임 사무처장 보임



KISO는 지난 6월 1일, 신임처장으로 김경태 前 하나로드림 사업 본부장을 보임했다. 김경태 신임 사무처장은 인터넷 서비스와 정보통신 분야 전문기업인 나우콤과 드림라인을 거친 IT전문가이다.

인터넷 산업 전반에 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인터넷 자율규제의 정착을 위해 힘써줄 것을 기대해 본다. KISO저널

NEWS 3

KISO 이슈인포 개편

KISO가 매월 온라인을 통해 발행되는 KISO 이슈인포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이슈인포는 독자들이 인터넷 관련 이슈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인터넷 문화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슈인포를 통해 건전하고 발전적인 인터넷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시사점을 짚어나갈 계획이다. KISO저널

이슈인포 2호(2012년 5월) 주요내용

1. 트위터 계정삭제, 그 원인과 절차에 대한 갑론을박
2. 악성댓글 때문에 자살, 전 세계적 문제로 확대
3. 웹툰, 민-관 협력 자율규제로서의 의미있는 첫 시도
4. 인터넷○○녀, 이대로 괜찮은가?
5. 진화하는 피싱에 대한 제도적, 인문사회적 대책 필요